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8. 9. 4.
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8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(98. 9. 4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홍 기

가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국내 및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“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”에서 “공무원여비규정” 단일법령으로 제정·시행됨으로서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, 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 종전의 “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규정”을 단일법령인 “공무원여비규정 준용규정”으로 통합함.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준용규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, '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제15680호로 제정되어 동년 2월 28일 개정된 단일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

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우리구 여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8. 7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국내 및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“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”에서 “공무원여비규정” 단일법령으로 제정·시행됨으로서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, 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- 종전의 “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규정”을 단일법령인 “공무원여비규정 준용규정”으로 통합함.(안 제4조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6. 12.29 법률 제5,069호) 제15조
- 공무원여비규정(1998. 2.28 대통령령 제15,715호)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여비의 지급구분)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[별표 1]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.

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[별표1] 여비지급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.

제4조 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(이하 이 조에서 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규정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2.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3.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”로 “동규정 [별표1]”은“동규칙 [별표1]”로 본다.
4. 규정 제24조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5.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6. 규정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제2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규정 [별표 1] 의 “여비지급구분표”(이하 이 호에서“동표”라 한다)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, 동표의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내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(이하 이 조에서 "규정"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정 제8조제1항·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단서중 "소속 장관"은 각각 "구청장"으로 한다. 2. 규정 제8조제3항중 "재정경제원 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"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"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"는 없는 것으로 본다. 3.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"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"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, "동규정 제21조"는 "동규칙 제17조"로 본다. 4. 규정 제24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 5. 규정 [별표1]의 "여비지급구분표"(이하 이호에서 "동표"라 한다)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"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"은 "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"으로, 동표의 구분란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1중 "전문직공무원규정"은 "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"으로, 동표의 구분란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"공무원보수규정"은 "지방공무원보수규정"으로 본다. 	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[별표1]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.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[별표1] 여비지급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국외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(이하 이조에서 "규정"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정 제8조제1항중 "소속장관"은 "구청장"으로 본다. 2. 규정 제9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 3. 규정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"소속장관"은 각각 "구청장"으로 본다. 4. 규정 제24조제1항 단서중 "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"은 "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"으로 본다. 	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(이하 이 조에서 "규정"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정 제17조, 제22조, 제26조, 제28조 및 제29조중 "소속장관"은 각각 "구청장"으로 본다. 2.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"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"는 없는 것으로 본다. 3.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"관용차량량관리규정 제4조"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"로 "동규정 [별표1]"은 "동규칙[별표1]"로 본다. 4. 규정 제24조제5항중 "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"은 "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63조제2항"으로 본다. 5. 규정 제27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 6. 규정 제29조제1항중 "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" 및 동조제2항중 "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"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 7. 규정 [별표1]의 "여비지급구분표(이하 이 호에서 "동표"라 한다.)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"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"은 "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"으로,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"공무원보수규정"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"으로, 동표의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"전문직공무원규정"은 "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"으로 한다.